

시정·유관기관 정보

도서관 정보

의정소식 / 건강상식

#8

2021 고양가구박람회

일시 6. 10(목)~6. 13(일)
관람시간 10:00~18:00
장소 킨텍스 제1전시장(1홀)
주요내용 브랜드가구 전시 및 할인

#9

고양시 새벽시장 '호수장터'

기간 6. 27(일), 매주 토·일 **운영시간** 오전 06:00~09:00
장소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 측면광장
판매품목 양파, 대파, 애호박 등 약 25개 농가 생산품목
문의 031-908-7750, www.flower.or.kr

※ 우천 시 취소될 수 있음. 농산물 판매품목은 매일 변동될 수 있음.
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행사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

#10

고양 여성커뮤니티센터 무료 프로그램 안내

대상 고양시민 **운영일정** 4~12월
운영내용 마을활동, 식생활교육, 창업교육, 심리상담, 자원봉사, 노동상담, 주거복지상담 등 총 7개 분야
신청방법 전화신청(월~금) 09:00~18:00(사전예약 필수)
참가비 무료
장소 고양시 여성커뮤니티센터(일산서구청 2층)
문의 여성커뮤니티센터(031-8075-4670, 4672)
 ※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11

고양시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발급업무 재개 안내

재개일자 6. 1(화)~
신청대상 고양시민 또는 고양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(시민) 신분증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다른 경우 등본 또는 초본 준비(근로자 등) 명함, 사원증, 재직증명서 또는 예약장에 첨부된 근로확인서 제시

※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일예약 및 현장예약 불가. 예약시간 준수
 ※ 인터넷·모바일 예약방법
 검색창에 '고양시 통합예약' 입력→고양시 통합예약 홈페이지 접속→[빠른예약] 기타-'보건증 발급'-구' 선택 후 검색 클릭→예약창 클릭

보건증 발급 검사일로부터 5일 후(공휴일 제외)
 -인터넷(공공보건포털, www.g-health.kr/정부24, www.gov.kr), 구청,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

#12

고양시 청년정신건강 사업 안내

1. 청년정신건강치료비 지원
 -지원대상: 만 19~24세(2021년 기준 1986년~2002년생) 고양시 청년
 -지원내용: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(연 36만 원 한도)
 -지원조건: 소득기준 무관/질병코드 F20~29, F30~39 초진일로부터 5년 이내

2. 청춘나래 프로그램
 -이용대: 만 19~34세 고양시 청년으로 정신적,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
 -지원 프로그램 안내
 ① 마음봄: 우울, 불안, 분노, 사고, 지각, 민감성 관련 마음건강검진 및 일대일 상담
 ② 소통: 그룹인지재활, 긍정심리, 미술프로그램
 ③ 소담: 또래 청년들과 동아리모임, 교육, 여가활동
 ④ 소울: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는 가족들과의 만남 및 교육, 정보제공, 여가활동

문의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(031-968-2333)

#13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

신청기간 연중 상시
지원대상 청년층(18~34세), 저소득층(중위소득 50~60% 이하), 특정취약계층, 영세자영업자, 중장년(중위소득 60~100% 이하)

※ 미취업 구직자 중 신청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1유형과 2유형으로 결정

지원내용
 -1유형: 구직촉진수당(50만 원*6개월), 취업지원 서비스
 -2유형: 참여수당 최대 20만 원, 훈련비지원 및 훈련수당 최대 월 284천 원

-취업지원 서비스
제출서류
 -(필수) 취업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 -(필요 시 추가서류)
 · 가구단위 증빙서류: 가족관계증명원, 실증신고서
 ·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: 관련 추천서, 확인서
 ·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·재산·취업경험 관련 정보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

신청방법
 -온라인: www.work.go.kr/kua,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
 -고양상공회의소 전화 후 방문신청
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-31 라페스타 A동 2층
문의 및 신청 고양상공회의소(031-969-5817(내선 4번))

#14

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경기도 생활보조수당 신청 안내

신청대상자
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로서
 · 소득인정액: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자

· 다음 차상위계층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차상위 장애인, 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, 저소득 한부모 가정
수당금액 월 10만 원 **지급일** 매월 25일 지급
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
구비서류 신청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, 국가유공자(유족)증, 신청인본인명의 계좌사본, 저소득증명서(수급자증명서 등)

※ 유공자(유족)증 분실 시 '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' 대체가능

기타
 -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자격을 득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자격 신청과 동시에 생활보조수당 신청가능저소득자격 책정 시 책정일자로 소급하여 지급
 -신청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,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 -해당수당 기신청자 및 수급자는 상기내용 해당 안 됨
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(031-909-9000)/관할 동 행정복지센터

#15

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 소개

| 구분 | 상세 내용 |
|--------|---|
| 신고유형 | · 신규 갱신신고: 모든 신규 계약+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※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(목사적 갱신 등)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· 변경신고: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· 해제신고: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|
| 신고의무 | 임대인+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(위임신고 가능) ※ 계약서(원본)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|
| 신고방법 | 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://tms.molit.go.kr) 온라인 신고 · 주택 소재 등 행정복지센터 |
| 신고주택 | · 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, 다세대 · 주거용 오피스텔, 기숙사, 고시원 ·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|
| 신고지역 | · 수도권(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, 경기도)광역시, 도(군 단위 제외),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 |
| 신고금액 | ·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|
| 계약일 기준 | · 2021. 6. 1.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|
| 과태료 | · 미신고(지연사예 포함)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|